

토목공사업

■ 업무내용

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·개량하는 공사

EX: 도로·항만·교량·철도·지하철·공항·관개수로·발전(전기공사는 제외한다)·댐·하천 등의 건설, 택지조성 등

부지조성공사, 간척·매립공사등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5억원 이상	10억원 이상

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
- 2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의 종급 이상 건설기술인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※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(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종급기술인 이상 제외)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등급 이상	D등급
토목공사업	1,555,600원	5억원	117좌 (182,005,200원)	131좌 (203,783,600원)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

4. 시설·장비

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